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제1, 2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http://www.fms.or.kr

시스템 문의: 1588-8788

※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절차 및 안전관리방법 안내 사항은 FMS 홈페이지 [커뮤니티]-[자료실] 기타 법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1, 2종시설물

### ■ 제1, 2종시설물이란?

•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 시설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또는 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제1, 2종 시설물

• 제1, 2종 시설물의 대상범위 요약

※ 상세종류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구분	대상 범위
제 1 종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갈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홍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관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 2 종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홍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다중이용 용도별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 ■ 제1, 2종시설물 안전관리절차 (의무 이행사항)



## 의무사항 결과제출을 위한 FMS 사용자 등록

모든 사용자 준공전

### ■ FMS 사용자 등록 절차

• 제1, 2종시설물의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 등은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시설물관리대상 제출, 설계도서 제출, 시설물관리계획제출, 안전점검등 결과제출 등) 이행을 위해 FMS ID를 발급 또는 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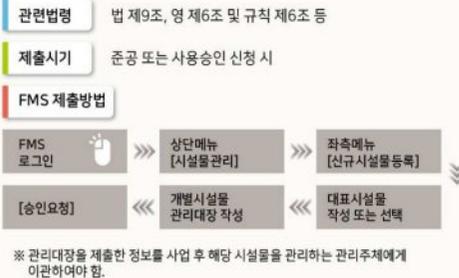
### ■ 여기서 잠깐! FMS 사용자 매뉴얼

- FMS 사용법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은 FMS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확인 가능
- 각 매뉴얼 상세 매뉴얼  
· FMS(www.fms.or.kr)접속 후 [커뮤니티]-[자료실]-[시스템사용법]
- 동영상매뉴얼  
· FMS(www.fms.or.kr)접속 후 [커뮤니티]-[동영상매뉴얼]  
· 유튜브(www.youtube.com) 접속 후 '시설물정보관리' 검색

## 1 시설물관리대상 제출 및 등록

사업주체 준공전

•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관리주체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관리대장을 제출한 정보를 사업 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이관하여야 함.

## 2 설계도서 등 제출

사업주체/인허가기관 준공전/후

•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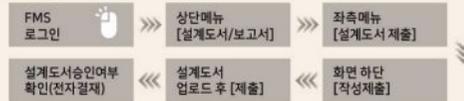
### 관련법령 및 제출시기

• 법 제9조, 영 제6조 및 규칙 제6조 등 [시행령 별표2, 시행규칙 별표 1]

구분	종류	제출의무자	제출시기
설계도서 등	가. 준공도면 나. 준공 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할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사업주체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보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리보고서	사업주체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 후 3개월 이내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최종감리보고서	사업주체 또는 인허가기관	사업주체 또는 인허가기관

※ PDF, TIF(CCITT Group4) 형식으로 제출가능, 작성서식 및 목차는 FMS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 FMS 제출방법



## 3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관리주체 2월15일까지

•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연단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

\* 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9호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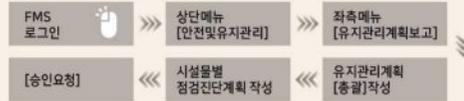
\*\*유지관리 조직·인원·장비 등, 시설물 점검진단·보수보강계획 등

※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은 5년 단위 주기관리계획 제출

관련법령 법 제6조, 영 제3조 및 규칙 제3조 등

제출시기 매년 2월 15일까지 FMS를 통해 제출  
(준공 다음연도부터 제출)

### FMS 제출방법



※ 관리대장을 제출한 정보를 사업 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이관하여야 함.

# 4

## 안전점검등 결과 제출

관리주체

실시완료  
30일 이내

###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출

-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제1종시설물은 의무)을 실시
-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결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 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

관련법령 법 제11~13조 및 제17조, 영 제8~13조 등

의무사항 제1, 2종시설물 대상 안전점검등

구분	실시 의무대상 유무		관련조항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대상	대상	법 제11조
정밀안전점검	대상	대상	
정밀안전진단	대상	필요 시	법 제12조
긴급안전점검	필요 시	필요 시	법 제13조

실시시기 시행령 [별표 3]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건축물 외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1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해빙기 전(2·3월), 우기 전(5·6월), 동절기 전(11·12월) 각 1회 이상

제출시기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FMS를 통해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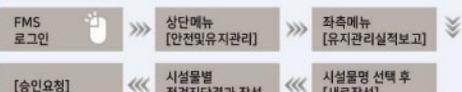
### ■ 긴급안전점검 결과 제출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

관련법령 법 제13조, 영 제11조 등

제출시기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FMS를 통해 제출

### FMS 제출방법



\* 대행의뢰한 경우 대행업체가 결과제출 후 관리주체가 승인

### ■ 안전점검등 책임기술자 자격

-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관리주체의 소속직원이 있는 경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자체수행 가능 (정밀안전진단은 자체수행 불가)

- 시행령 [별표 5] 안전점검 및 정밀(긴급)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

구분	기술자격 요건	교육요건
정기안전 점검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도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일 것 나. 건축사	· 해당분야(토목,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정밀(긴급) 안전점검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도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일 것 나. 건축사(5천제곱미터 이상시설물의 설계관리실적이 있을 것)	· 해당분야(토목, 건축 분야)의 정밀(긴급)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정밀안전 진단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도목, 건축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일 것 나. 건축사(5천제곱미터 이상시설물의 설계관리실적이 있을 것)	·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19.1.1 이후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는 해당분야 교육이수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제 수행기간 2년 이상일 것

- 단,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같은 가능

###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

- 안전점검등(정기·정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관련 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단일 시설물의 점검·진단 범위를 구분하여 대행업체에 발주·수행불가
- 법 제27조(하도급 제한 등)에 의한 대행업체의 하도급만 가능

대행가능범위 법 제26조, 제40조, 영 제16조, 28조

구분	정기안전 점검	정밀(긴급) 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	성능평가
안전진단 전문가*	가능(시설물 분야별 등록종 보유 시)			
유지관리업체**	가능(책임기술자 보유 시)			불가

\* 안전진단전문기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

\*\* 유지관리업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유지관리업자

\*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체는 FMS 접속 후 [관련업체] 메뉴에서 검색 가능

### ■ 여기서 잠깐! 대행 시 제한사항이 있나요?

- 하자담보책임기간 전 시행하는 마지막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대행의뢰 하여야하며, 아래 업체에 의뢰불가
-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계열회사
-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

# 5

## 성능평가 결과 제출

관리주체

실시완료  
30일 이내

### ■ 성능평가란?

- 시설물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의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하고, 이를 통해 관리주체가 보수·개량·교체 등의 최적시기 결정 등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

-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은 어떻게 되나요?

교량 및 터널, 옹벽 및 절토사면	1종·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고속철도, 일반철도의 교량 및 터널과 옹벽 및 절토사면
항만	1종·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
댐	1종·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다목적댐
건축물	1종·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항청사
하천	1종·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홍문, 제방
상수도	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
옹벽 및 절토사면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고속철도·일반철도의 옹벽 및 절토사면

- 최초 성능평가는 언제 실시하나요?

- 법 시행(18.1.18) 이후 제1종시설물의 경우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성능평가 실시
- 만약, 법 시행 이전 정밀안전진단(제1종시설물)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제2종시설물)을 실시하였다면, 제1종시설물은 도래하는 정밀안전진단, 제2종시설물은 도래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시기에 성능평가 실시
- 성능평가의 최초 실시 이후 성능평가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성능평가 실시

- 성능평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성능평가의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어떻게 성능평가를 실시하나요?

- 안전성(상태 및 구조),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종합 성능을 결정하고 관리주체가 설정한 시설물 성능목표와 비교하여 효율적인 투자우선순위를 제안

### ■ 여기서 잠깐! 성능목표 & 투자우선순위란?

- 성능목표란?
-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해 적절한 안전수준과 장기적인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관리의 목표인 성능목표를 설정,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세부지침을 따름
- 투자우선순위가 무엇인가?
-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 실적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 예산 집행에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

# 6

## 유지관리 결과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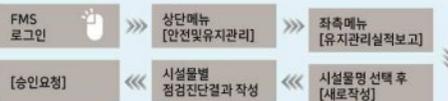
관리주체

실시완료  
30일 이내

의무사항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보강을 시행한 경우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FMS를 통해 제출

관련법령 법 제41조, 영 제29조

### FMS 제출방법



# 7

## 안전취약시설물 등 조치결과 제출

관리주체

조치단계별  
완료 시

### ■ 중대결함 계획 및 조치결과 제출

- 의무사항 중대결함이 발생한 경우 사용제한, 위험표지 설치 및 주민 공지 등 조치를 취하고 2년 이내 보수·보강 등 조치착수, 착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이를 완료하여 FMS를 통해 결과 제출
- \* 중대결함이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영 제18조 및 시행규칙 별표3 참고)

관련법령 법 제22조~제25조, 영 제18조~20조 등

### ■ 안전 취약시설물(D,E 등급) 조치결과 제출

- 의무사항 점검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 위험표지 설치 및 주민공지 등 조치를 취하고 FMS를 통해 결과 제출

관련법령 법 제16조, 제23조~제25조 등

### ■ 위험표지 설치 및 주민공지

- 의무사항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안전취약시설물(D,E 등급)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지
- \* 시행규칙 별표4 위험표지 규격 참고

관련법령 법 제25조, 영 제20조 및 규칙 제21조 등